

- ☞ 평정대상연수 : 교육성적평정 ('22년 연수성적 95점에 대한 환산성적 95점 반영)
이수실적평정 ('16년 및 '17년 이수실적 반영)
 - 2015년 이수성적은 피평정자에게 유리한 성적이나 평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평정대상에서 제외됨
- ☞ 평정점 계산 : $6점 \times \frac{95}{100} = ('22년 연수성적) + 6점 \times 2회 ('16년, '17년 실적) = 17.7점$
- ☞ K교사의 직무연수평정점 ⇒ 17.7점

2) 교장 자격연수 대상자 및 교장·장학(교육연구)관 승진후보자 순위명부 작성 대상자

- 평정대상 : 평정대상자가 당해 직위에서 이수한 60시간 이상의 직무연수 1개의 연수이수 성적을 평정대상으로 함
- 교감 : 교감 직위 또는 교감 자격 취득 후 장학(교육연구)사 재직 시 연수실적
- 장학(교육연구)사 : 교감, 장학(교육연구)사에서의 연수실적
- 평정점 ⇒ 6점 만점
- 평정방법 : $6점 \times \frac{\text{직무연수환산성적}}{\text{직무연수성적만점}}$

〈참고〉

- 교감자격증을 소지하고 교사의 직위에서 이수한 직무연수실적 ⇒ 평정대상이 아님
- 장학(교육연구)사로 임용되기 전의 교육전문직원 후보자과정 연수 ⇒ 교육전문직원으로 임용 이전에 교사의 직위에서 이수한 실적일 경우에는 평정대상이 아님

3. 연구실적 평정(승진규정 제34조 내지 제37조)

가. 연구실적 평정은 연구대회 입상실적과 학위취득 실적으로 나누어 평정한 후 이를 합산한 성적으로 한다.
※ 학위취득 연월일 기준 및 입상 연월일 기준 해당(학)년도에 반영

나. 연구대회입상실적 평정

- 1) ‘당해 직위’ 또는 ‘전직하기 전의 직위’에서의 연구대회 입상실적을 대상으로 함
 - 예) 교육전문직원 경력이 있는 교감 ⇒ 교감 자격증을 받은 후의 입상실적
장학(교육연구)사 ⇒ 교감·장학사·교육연구사 직위에서의 입상실적
초등교사에서 중등교사로 전직한 자 ⇒ 초등학교 재직 시 입상실적도 포함
- 2) 연구대회 입상 실적이 2인 공동작인 경우에는 각각 입상실적의 70%, 3인 공동작인 경우에는 각각 입상실적의 50%, 4인 이상 공동작인 경우에는 그 입상실적의 30%를 인정함
- 3) 국가·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개최하는 교육에 관한 연구대회로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전국 규모의 연구대회에서 입상한 실적
- 4)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 또는 특별자치도(이하 “시·도”라 한다)의 교육청·지방공공기관 및 공공단체등이 개최하는 교육에 관한 연구대회로서 시·도 교육감이 인정하는 연구대회에서 입상한 연구실적을 대상으로 함